

금 전 소 비 대 차 계 약 서

아래에 표시된 대여인(이하 "갑"이라 한다)과 차용인(이하 "을"이라 한다)은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(이하 "본 계약"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1. 당사자의 표시

	대여인 ("갑")	차용인 ("을")
성명 / 법인명		
주민(법인)등록번호		
주소 / 본점소재지		
대표자 (법인인 경우)		
연락처		

2. 계약의 주요 내용

대여원금	일금 원정 (₩)		
대여실행일	년 월 일	변제기(만기)	년 월 일
이자율	연 %	지연손해금률	연 %
이자지급 주기·일자	☐ 매월 ☐ 매분기 ☐ 매년 ☐ 원금 변제 시 일괄 / 지급일 : 매 일		
원리금 입금계좌 (대여인 "갑")	은행명 :	계좌번호 :	예금주 :
대여금 수령계좌 (차용인 "을")	은행명 :	계좌번호 :	예금주 :

제1조 (목적) 본 계약은 "갑"이 "을"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"을"이 이를 차용하여 변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대여금의 실행)

- "갑"은 "을"에게 위 「2. 계약의 주요 내용」 표에 기재된 대여원금을 대여하고, "을"은 이를 차용한다.
- "갑"은 대여실행일에 위 표에 기재된 "을"의 수령계좌로 대여원금을 이체하며, 이체가 완료된 때에 "을"이 대여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.
-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원금·이자 및 그 밖의 금원을 현금으로 수수하지 아니하고, 위 표에 기재된 계좌를 통한 이체의 방법으로만 수수한다.

제3조 (이자)

- 본 대여금의 이자율은 위 표에 기재된 이자율로 한다.
- 이자 는 대여실행일부터 원금 완제일까지의 실제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 365일(윤년은 366일)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.
- 본 계약에서 정한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률은 「이자제한법」 제2조 제1항 및 같은 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.

제4조 (이자의 지급)

- "을"은 위 표에 기재된 이자지급일에 해당 기간의 이자를 "갑"의 입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.
-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.
- 관계 법령에 따라 "을"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경우, "을"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고 그 원천징수영수증을 "갑"에게 교부한다.

제5조 (원금의 변제)

- "을"은 변제기까지 대여원금 전액을 "갑"의 입금계좌로 이체하여 변제한다.
- 원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경우 그 회차·금액 및 각 변제기일은 특약사항란에 기재하며, 특약사항란의 기재가 본항에 우선한다.

③ 변제기는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만 연장할 수 있다.

제6조 (기한 전 변제) "을"은 언제든지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 전에 변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발생하지 아니한다. 기한 전 변제 시의 이자는 실제 변제일까지 계산한다.

제7조 (변제충당) "을"의 변제액이 채무 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, 그 변제액은 비용, 지연손해금, 이자, 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.

제8조 (지연손해금) "을"이 이자 또는 원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, "을"은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지체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위 표에 기재된 지연손해금률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"갑"에게 가산하여 지급한다.

제9조 (기한의 이익 상실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"을"은 "갑"의 별도 최고 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, 잔존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전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.

- 1. 이자의 지급을 회 이상 지체한 경우
- 2. "을"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·가압류·가처분 또는 경매 등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
- 3. "을"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
- 4. "을"이 발행·배서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
- 5. "을"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, "갑"의 서면 최고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

제10조 (담보 및 연대보증)

- ① "을"은 본 계약상 채무의 담보로 다음을 제공한다. ☐ 해당 없음 ☐ 제공 :
- ② 연대보증인은 "을"과 연대하여 본 계약상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며, 그 보증채무 최고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.
※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(「민법」 제428조의2).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본조 제2항 및 아래 연대보증인 서명란은 삭제하거나 사선을 긋는다.

제11조 (통지) 당사자는 위 표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통지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통지의무자가 부담하며, 위 표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된 통지는 통상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.

제12조 (계약의 변경) 본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에 의하여만 변경할 수 있다.

제13조 (관할법원)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"갑"의 주소지(법인인 경우 본점 소재지)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.

제14조 (기타)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민법」 등 관계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.

특약사항

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(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3통)을 작성하고, 당사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.

20 년 월 일

대여인 ("갑")	성명(법인명) : (인)	주민(법인)등록번호 :
	주소 :	
차용인 ("을")	성명(법인명) : (인)	주민(법인)등록번호 :
	주소 :	
연대보증인	성명 : (인)	주민등록번호 :
	주소 :	

[첨부] 1. 대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. 차용인(연대보증인) 인감증명서 1부 3. 대여금 이체확인증 1부

작성 시 유의사항

※ 이 문은 계약서 본문의 일부가 아닙니다. 출력·보관 시 제외하셔도 무방합니다.

1. 이자율의 법정 상한 — 연 20%

-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%입니다(「이자제한법」 제2조 제1항, 같은 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).
-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약정은 무효이며, 이미 지급한 초과이자 원본에 충당되고 잔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초과 이자를 받은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지연손해금률도 같은 한도 내에서 정하는 것이 안전하며,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.

2. 법인과 대표이사·주주 등 특수관계인 간의 대여(가지금·가수금)

- **세법상 이자율**: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며, 그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당좌대출이자율(연 4.6%)을 시가로 봅니다(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9조 제3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).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계속 적용합니다.
- **저리·무상 대여 시**: 시가와 차액이 인정이자로 익금산입되고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소득세·4대보험 부담이 추가로 발생합니다. 업무무관 가지금·가수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, 대손금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.
- **상법상 절차**: 이사·주요주주 등이 회사와 거래하려면 **미리 이사회**의 승인(이사 3분의 2 이상)을 받아야 합니다(「상법」 제398조). 이사회 의사록을 반드시 함께 보관하십시오. 상장회사는 「상법」 제542조의9에 따라 주요주주·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.

3. 법인이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(가수금 이자 등)

-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**소득세 25% + 지방소득세 2.5% = 27.5%**를 원천징수합니다.
- **납부기한**: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**다음 달 10일**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세액 납부(반기납부 승인 사업자는 반기의 마지막 달 다음 달 10일).
- **지급명세서 제출기한**: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**다음 연도 2월 말일**까지.
- 반대로 개인이 법인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며, 법인은 해당 이자를 익금에 산입합니다.

4. 친족 등 개인 간의 무상·저리 대여

- 적정이자율(연 4.6%) 상당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이 **연 1천만 원 이상**이면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).
- 따라서 완전 무이자라면 대출원금이 **약 2억 1,739만 원** 미만인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(1천만 원 ÷ 4.6%).
-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1년으로 보며,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**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** 보아 다시 계산합니다.
- **증여세 신고·납부기한**: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**3개월 이내**.

5. 인지세

- 인지세 과세대상인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**금융·보험기관과 체결한 것에** 한정됩니다(「인지세법」 제3조 제1항 제2호).
- 따라서 개인 간 또는 일반 법인과 개인 간의 차용증·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인지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.

6. 증빙 관리 — 계약서보다 '실제 이행'이 중요합니다

- 원금·이자 전액을 계좌이체로 수수하고, 이체 적요란에 "대여금", "대여금 이자"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십시오.
- 약정한 이자지급일에 실제로 이자가 입금되지 않으면 계약서의 증빙력은 크게 떨어집니다.
- 사후 소급작성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공증 또는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 **확정일자**를 확보하고, 인감을 날인한 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
- 원리금 상환내역을 별도의 관리표로 정리해 두면 세무조사 시 소명이 용이합니다.

본 서식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, 작성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.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실제 계약 체결 및 세무처리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